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55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한병도·정태호·임오경

한정애 • 윤준병 • 이훈기

신정훈 · 윤건영 · 임호선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 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 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 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② (생 략)	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③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1
경우에는 <u>2024년</u> 12월 31일까	<u>2027년</u>
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	2
는 경우에는 <u>2024년</u> 12월 31	<u>2027년</u>
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4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	

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생략)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 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 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

2027년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①
2027년

<u>.</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를 <u>2024년</u>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 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 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 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 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u>2027년</u>
③
<u>2027년</u>